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아동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신설(안 별표)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4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 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td><td>법 제4 1조 제1항</td><td>50</td><td>100</td><td>200</td></tr><tr><td>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td><td>법 제4 1조 제1항</td><td>150</td><td>250</td><td>3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 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50	100	2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150	250	30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 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td><td>법 제4 1조 제1항</td><td>50</td><td>100</td><td>200</td></tr><tr><td>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td><td>법 제4 1조 제1항</td><td>150</td><td>250</td><td>300</td></tr><tr><td>다. 법 제24조의5를 위 반한 경우</td><td>법 제4 1조 제1항</td><td>100</td><td>200</td><td>3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 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50	100	2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150	250	300	다. 법 제24조의5를 위 반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 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50	100	2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150	25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 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50	100	2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150	250	300																																						
다. 법 제24조의5를 위 반한 경우	법 제4 1조 제1항	1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연 락 처	(044) 202 - 3350